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27>

JCCT 2024-3-4

라몬 삼페드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아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의 영화 <씨 인사이드> 를  
중심으로-

**Ramon Sampedro: Finding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 Focused on Alejandro Amenabar's Movie <Sea Inside> -**

김동균\*

**Donggiun Ki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 <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의사 조력 자살, 씨 인사이드, 중증환자, 존엄사, 소송 제기

**Abstract** In this articl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how Ramon Sampedro asserts his right to a dignified death through litigation. Ramon,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The Sea Inside> is a patient, severely paralyzed man who has spent more than 26 years in bed. The only thing he can do is verbally ask his family for help. Ramon can no longer support this worthless existence, so he pursues death with dignity. Ramon files a lawsuit to authorize death with dignity within a legal framework, but is denied on the grounds that life is a duty. Ramon eventually fulfills his desire for death with dignity with the help of his friends. Ramon sets up a camera to document the process of his death and introduces the cyanide, which is used in assisted dying, by inhaling cyanide in front of the camera and dying quietly. Although Ramon is not a terminally ill patient, who can blame him for practicing death with dignity as he chooses to do so. We will need to work to build social consensus and legislate for death with dignity for seriously ill patients like Ramon.

**Key words** :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Sea Inside, Severely Paralyzed Man, Death with Dignity, File a Lawsuit

\*정희원,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주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31일

Received: January 2, 2024 / Revised: January 19, 2024

Accepted: January 31, 2024

\*Corresponding Author: botanist@silla.ac.kr

Silla Univ, Korea

## I. 서론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Alejandro Amenabar) 감독의 영화 <씨 인사이드, Sea Inside> 는 2007년 스페인에서 개봉되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라몬 삼페드로(Ramon Sampedro)는 실존 인물이며, 20대에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모랫바닥에 몸이 부딪혀서 전신마비가 되었다. 라몬은 26년간을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기에 스스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외쳤고 자신의 권리를 관철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여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화가 상영될 때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안락사가 생명윤리적인 부분에서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허용하였다.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유명인으로는 장 뤽 고다르, 데이비드 구달 박사, 프랑스의 유명 배우 알랭 드롱 등이다. 장 뤽 고다르는 프랑스의 영화감독으로 이른바 '누벨바그'의 선구자였고,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호주의 생태학자로 104세까지 장수한 유명인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알랭 드롱은 20세기 미남 배우의 상징이었다[1]. 배우 알랭 드롱이 사망시원한 안락사의 방법은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의사 조력 사망'이다. '의사 조력 사망'이라는 것은 의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하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가 안락사를 최종 결정해서 실행하는 데까지는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수반과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야 하고, 생존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하고, 의사 표현이 명확한 상태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안락사를 실행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가족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조력 사망'은 불법이다[2].

영화에서 주인공 라몬은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라몬이 원하는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몬은 아름답고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라몬의 소송은 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

킨다. 라몬은 인간의 삶은 권리이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법원은 라몬이 주장하는 안락사를 기각한다. 라몬은 법원이 기각하였지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안락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봐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영화에서 라몬은 '의사 조력 사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를 원한다.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로서 불치병의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등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윤리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의학적 입장에서든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3].

영화속의 라몬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너무 싫은 것이다. 라몬은 자신과 같이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변호사 홀리아를 만나게 되면서 홀리아를 사랑하게 된다. 어느날 라몬은 홀리아에게 당신을 그리워했으며 보고 싶을 때마다 상상으로 당신의 향기를 쫓아가서 깊이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한다. 라몬의 말을 들은 홀리아도 라몬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한다. 라몬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라몬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너무 잘 알기에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면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다. 라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안락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II. 조력존엄사와 자기결정권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고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이 법률 제1조(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조 목적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2)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3)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4]. 연명의료결정법은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임종과정에 있다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과 조건이 제시되어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자신의 삶에 대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 995호 판결)’과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이 근간이 되어 제정되었다 이 두 사건이 바탕이 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난 후 빠른 속도로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난 뒤 8개월이 지나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조사해보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한 사람이 총 5만8845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뒤 매달 6000명~7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웰다잉 전문가들은 “존엄사법이 생기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점, 이제 막 시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뿌듯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했다[5].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에도 명시하였듯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자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죽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죽음을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며, 또 타인의 죽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빠른 시간에 맞이하게 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6]. 2016년 2월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조력존엄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안규백 의원 등 12인(의안번호 2115986)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임종 과정의 환자가 아니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본인 의사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법률 개정안에 ‘조력존엄사’ 도입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개정법률안은 2016년에 제정된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조력존엄사’를 명문화하는 것이며, 임종과정의 환자가 아닌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까지 삶을 마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 제정 법률보다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조력존엄사’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을 법률적으로 합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조력존엄사에 대하여 환자가 죽음을 결정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약을 누가 투여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입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투약하여 사망하는 ‘의사조력자살’이다. 이미 안락

사를 법제화한 국가들에서 허용하고 있는 형태도 이 두 가지이다”[7].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의 통과를 놓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울대 윤영호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저조한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과도한 가족에 의한 결정 등의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발의된 조력존엄사 입법화 여론조사 결과는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절망적 표출이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윤영호 교수팀은 ‘의사 조력 자살’의 법제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000명 중에 76.3%가 법제화에 동의하였다.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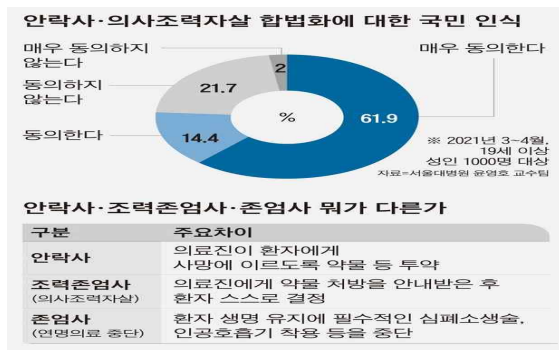


그림 1.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합법화 조사 결과  
 Figure 1.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Legalization Survey Results

그리고 토론회에서 서울대 철학과 김현섭 교수는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논거가 그대로 비말기환자의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이유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의사가 환자를 안락사시키는 자발적 안락사까지 허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그 역시 자살을 포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8].

‘조력존엄사’가 법률에 명시가 되면 의사는 자살을 조력했다는 것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치사약을 처방할 수 있으며,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의사의 조력을 통해 여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질 수 있지만

법률적인 틀 안에서 자살을 포함한 죽음을 너무 쉽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질 수 있다.

### III. 라몬 삼페드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아서

영화 <씨 인사이드, Sea Inside>는 첫 장면에서 바그너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해변을 바라보고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가는 라몬의 변호사인 홀리아를 보여준다. 5분 동안 화면 어디에도 라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라몬의 가족들과 지인들만을 보여준다. 라몬이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름을 암시한다.

라몬의 조력자 케네는 라몬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고 라몬의 집을 방문한다. 케네는 라몬이 존엄사에 대한 소송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 홀리아와 함께 라몬의 집을 방문하고, 홀리아는 라몬에게 “왜 죽으러 하나요?”라고 묻는다. 라몬은 “제 자신을 위해서요. 이런식의 삶... 저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라몬은 자신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 또한 비난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한다. 홀리아는 조력존엄사가 불법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라몬이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냐고 반문하자, 라몬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며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홀리아는 “우리가 범정에 가게 되면 그들이 당신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볼꺼예요”라고 소송에 대해 물어본다. 라몬은 홀리아처럼 일반인들에게는 2미터의 거리가 가깝지만 자신은 2미터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자신은 전신마비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무가치한 삶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

일반적인 안락사의 형태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진정제나 마취제를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망하게 하는 형태와 불치의 암환자가 생명이 끝나는 시기에서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의사에 따른 형태가 있다[9]. 그러나 라몬이 추구하는 조력존엄사의 형태는 정상적으로 삶

을 살아갈 수 없고 가족의 돌봄만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무가치한 삶으로 생각하고 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라몬은 홀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식의 삶... 저에게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무가치한 삶을 종료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라몬이 소송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 변호사 홀리아의 질문에 답하는 라몬  
Figure 2. Ramon answers a question from Julia, a lawyer

변호사 홀리아와 조력자 게네는 라몬과의 대화를 마친 후 게네는 라몬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는 있지만 라몬에게 존엄사의 수단인 청산가리를 줄 수 없다고 한다. 라몬은 온 가족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며, 자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형태를 마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종료할 수가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즉 조력 존엄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게네는 라몬이 진심으로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라몬의 형은 “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집안에서 행해지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라몬이 추구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거부한다. 형과 라몬의 가족들은 라몬이 가족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살이라 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를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몬은 회복불가능 환자이기 때문에 끝없이 가족의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력존엄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라몬이 조력존엄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가족들의 대표인 형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라몬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소송을 하여 합법적으로 조력존엄사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라몬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의사 조력 자살’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라몬의 ‘조력존엄사’에 대해 기각을 판결한다. 라몬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실행하고자 한다.



그림 3. 라몬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  
Figure 3. Ramon's lawsuit is dismissed by the court

변호사 홀리아는 라몬이 쓴 편지를 보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 홀리아는 라몬에게 “라몬 당신에겐 미래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묻자 라몬은 단호하게 “죽음”이라고 한다. 라몬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마치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방송이 나가고 난 뒤 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신부는 라몬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이나 우리의 주목이 아닐까”라고 말하며 라몬이 추구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평가 절하를 한다. 그리고 신부는 라몬의 집에 와서 라몬이 삶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그가 추구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틀린 것이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라몬은 신부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신부가 속한 종교적인 교리부분이라며 신부가 주장하는 죽음에 대한 견해를 거절한다.

변호사 홀리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녀는 라몬에게 찾아가 라몬에게 “나도 내 삶을 끝내고 싶어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같음을 알고 서로 깊은 신뢰감을 가지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라몬은 법정에서 직접 출두해서 판사들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조력존엄사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설명하고 싶어 한다. 법원에 도착한 라몬은 기자들이 “판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라몬은 자신의 결정

이 비정상적인 사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법원에서 라몬의 변호사는 판사들에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법원에 출두한 라몬이 준비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라몬에게 3분의 시간을 허용해주길 청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절차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한다.

법원에서 돌아온 라몬은 한밤에 “내가 왜 죽기를 원하나?”라고 절규하면서 울부짖는다. 라몬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기에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더 이상 조력존엄사를 행할 수가 없기에 스스로 존엄사의 방법을 준비한다. 라몬은 게네에게 존엄사의 수단인 청산가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다. 게네는 내일 존엄사를 준비하기 위해 로사와 함께 떠나는 라몬에게 “네. 전 당신도 알고 있는 그것을 시험하고 있어요. 네. 분말요. 정확하게 200mg를 계산해야 돼요. 좀 고통이 따를 것 같아요”라고 통화하면서 라몬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청산가리를 준비한다. 라몬은 자신의 조력존엄사를 도와주고 있는 게네에 대하여 “게네, 당신이 모두 다 잊어버리는게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언젠가 당신이 이 문제로 인해 연루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마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고 난 뒤 자신의 존엄사를 도와준 게네와 마크가 자신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작별을 고하면서 걱정하는 것이다.

라몬은 존엄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로사와 떠난다. 라몬은 조력존엄사를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준 조력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촬영하는 카메라 앞에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말한다.

판사님들, 오늘 제도상의 나태함에 지친 나는 부득이 죄인처럼 숨어서 죽으려 합니다.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작은 행동들로 주의 깊게 나누어졌다는 것과 몇몇 우정어린 손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내 조력자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그들의 손을 자를 것을 제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에게 기여한 것은 손뿐이니까요[10].

라몬은 ‘조력존엄사’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존엄사를 위해서 도움을 준 모든 조력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라몬의 조력존엄사 소송에 대한 선택은 “인간이 죽음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권장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세상에 피력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11, 12]. 그러나 라몬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인 ‘조력존엄사’가 당사자인 라몬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라몬의 가족에게는 큰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몬의 가족은 함께 사는 가족 중의 한 명인 라몬이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가족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13, 14].

라몬은 조력존엄사의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고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무의미한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조력존엄사와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존엄사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한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도 2016년 2월 3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은 자아존중감이 많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중증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한다[15]. 그러나 이 법은 ‘1)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2)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3)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한된 조건은 존재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난 뒤 존엄사법, 안락사법 및 웰다잉법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워졌다. 2022년 6월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불명확한 법률을 부분 개정하여 '조력존엄사법'을 법제화하는 법률 발의를 하였다.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하여 자살을 포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력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조력존엄사의 법률적인 목적은 희생불가능하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고, 그리고 이런 제한적인 조건을 지닌 환자들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영화 <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은 실존인물이며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당한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ttps://m.mbn.co.kr/news/culture/4930670>
- [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22/TLHNYANMA5DDRLHQUNL43CJO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22/TLHNYANMA5DDRLHQUNL43CJO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3] <https://ko.m.wikipedia.org/wiki/%EC%95%88%EB%9D%BD%EC%82%AC>
- [4]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 [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145.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145.html)
- [6] J. M. Maeng, "Euthanasia, Law of Death with Dignity and Well-dying Law," *Journal of The Philosophical Investigation*, No. 44, pp. 185-211, 2016. DOI:10.33156/philos.2016.44.007
- [7] Y. L. Kim, "Ethical Issues with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25, No. 4, pp. 367-385, 2022. DOI: 10.35301/ksme.2022.25.4.367
- [8] <https://www.medifone.com/mobile/article.html?no=169460>
- [9] H. J. Jo,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 31, pp. 221-242, 2016. DOI: 10.22779/kadw.2016.31.221
- [10] Alejandro Amenabar's movie <Sea Inside>, 2007.
- [11] T. H. Kim, "Social Perspective on Death with Dignity Through the Movie *The Sea Inside*," *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 Vol. 14, No. 3, pp. 3429-3438, 2023.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4.3.243>
- [12] J. W. Lee, "Attitude of the General Public towards Death with Dignity and Their Determina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6, No. 2, pp. 230-237, 2021. DOI: <https://doi.org/10.21032/jhis.2021.46.2.230>
- [13] D. G. Kim, "A Study on the Morality of Dying with Dignity," *Journal of The Ethical research*, Vol. 1, No. 74, pp. 319-349, 2009. DOI: 10.15801/je.1.74.200909.319
- [14] S. S. Han, "A Study on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Public Law Journal*, Vol. 11, No. 3, pp. 153-181, 2010. DOI: 10.31779/plj.11.3.201008.006
- [15] J. J. Park, S. J. Park, and I. Kim,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on Human Rights Aware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6, pp. 751-762, November 2023.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751>